

■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[별지 제2호의3서식]

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

[] 재발급

수진자	건강보험증번호	주민등록번호 등	
	성명	전화번호 (자택) (휴대전화)	
진료과목		상병명	상병코드

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(해당사항에 [✓] 표시 및 기재)	1. [] 인공호흡기 사용자(건강보험 급여대상자)
	2. 호흡기 질환 병력 [] 없음 [] 있음() ※ 폐기종, 기흉,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기침유발기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.
	3. 호흡기능검사 []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/min 이하(L/min) []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(해당사항에 ☑ 표시) □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□ 만 6세 이하의 소아 □ 의식 저하 □ 인지기능 저하 □ 기관절개
	4.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(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) []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
	처방 구분 □ 최초 처방 □ 재처방(2차 이상)

처방기간	~ . . . (개월)	다음 처방일	. . .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

처방전 사용기간	교부일로부터 () 일간	※ 사용기간 내에 대여·제출하여야 합니다.
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년 월 일

요양기관명(기호) : () (요양기관 직인)

담당의사성명(면허번호) : (제 호)

전문과목(전문의 자격번호) : (제 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 "재발급"에 [✓]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.
-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.
-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, 만 6세 이하의 소아, 의식 저하,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 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.
-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, 기침유발기 종류,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)를 적습니다.
-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 합니다.
-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.
-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,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(재활용품) 60g/m²]